데일리펀딩

투자개요

구 분	내 용
투자대상	금촌역 역세권 오피스텔 건축
대출목적	공사대금, 사업비용 조달
투자기간	[4] 개월
이자율	연 [15.00] %
이자기간 산정방식	최초 이자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일(1)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대출실행일 응당일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 종료일로부터 일(1)개월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대출실행일 응당일까지로 한다.
이자지급방법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원천징수 및 플랫폼이용수수료 차감 후 지급
플랫폼이용수수료	투자금액 x 월 0.1%
연체이율	연 [18.00] %
원금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손실보전 (데일리 안심플랜)	채권부실 발생시, 적립금 범위 내에서 미 상환 원금의 90%까지 손실보전을 진행합니다.('19년12월20일 기준 적립금 10억 원)

구 분	내 용
사업진행	2019년 1월 인허가(완료) →2019년 05월 공사착공(완료) →2019년 05월 분양(시작) → 2020년 10월 준공(예정)
채권보전	시행사 주식 100%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시행사 대표이사 연대보증 시행권 포기각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사업주체 명의변경동의서 공사비 채권양도담보 유치권포기각서 시공사 채권매입확약 시공사 연대보증 책임준공확약
담보가치	잔여 분양수익금 : 약 389억원 데일리펀딩 한도금액 : 100억원 LTV : 25.7%
공사기간	2019년 5월 ~ 2020년 10월(예정)

PF 공시항목

▪ 시공사 재무건전성

단위 : 백만원

해당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손익
2016	26,009	10,634	15,374	1,200	28,995	7,376
2017	42,534	18,916	23,618	1,200	34,229	8,244
2018	77,339	50,913	26,425	1,200	57,224	2,807

▪ 시공사 시공실적

번 호	사업명	공사기간
1	가평 빌라단지 신축공사	~2018.12
2	홍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019.02
3	안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2019.04

▪ 진행중인 사업지

번 호	사업명	공사기간
1	화성 오피스텔 신축공사	~2020.03
2	평택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2020.05
3	안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2021.05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주 의 사 항]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토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 대 1551㎡

1.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자)	184371-0003123	단독소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64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 기록사항 없음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 기록사항 없음

[참 고 사 항]

가.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나.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다.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라.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일시 : 2020년 01월 02일 09시 42분 34초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주 의 사 항]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토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1-2 대 370㎡

1.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수탁자)	184371-0003123	단독소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58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 기록사항 없음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 기록사항 없음

[참 고 사 항]

가.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나.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다.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라.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력일시 : 2020년 01월 02일 09시 44분 57초

대 출 약 정 서

다음 당사자들은 2019년 6월 12일 다음과 같이 이 대출약정(서)[이하 **"이 약정(서)"**]을 체결한다.

(1) **주식회사** -(이하 **"차주"**)

(2)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대주"**)

(3) **주식회사** (이하 문맥에 따라 **"시공사"** 또는 **"법인연대보증인"**)

(4) (이하 **"개인연대보증인"**, 법인연대보증인과 개인연대보증인을 포괄하여 **"연대보증인"**)

전 문

차주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 71-2번지(이하 포괄하여 **"본건 사업부지"**) 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포괄하여 **"본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P2P 연계대부업자인 대주로부터 이 약정의 제 조건에 따라 합계 금 일백억원(W10,00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전을 대출(이하 **"본건 대출"**)받기로 하였다.

한편, 연대보증인은 피담보채무(제1조에서 정의됨)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 약정의 제 조건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원본 1부를 작성하여 첫머리 기재일자에 각자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대주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이 각 사본을 보관하기로 한다.

대주: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1, 16 층(역삼동, KR 타워)

대표자 사내이사 이 해 우 (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경기도 파주시 금촌69 주상복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71-2번지
3. 착공년월일 : 2019년 04월 0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20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원) VAT포함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기성청구 월 1회, 설계 및 감리비 청구후 즉시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원 본 대 조 필
(주)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원정	
		( ) % 원정	
		( ) % 원정	

11. 지체상금율 :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청구후 30일, 지연이자율 20%
13. 기타사항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안전관리예치금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019 년 01 월 02 일

도 급 인	수 급 인
주 소 인천	주 소 경기도
성 명 ㈜	성 명 ㈜ (인)

대출채권 및 사업지 등 매입 확약약정서

본 사업권 및 사업지 등 매입확약약정서(이하 "**본 약정**" 또는 "**본 약정서**")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9 년 6 월 12 일 체결되었다.

매입확약인 주식회사 (이하 "**매입확약인**")

매도예정인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매도예정인**")

전 문

주식회사 [illegible](이하 **"차주"**)은 대주로서 매도예정인 등과 2019 년 6 월 12 일자 대출약정금 합계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의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라 하며, 이후 수정 또는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를 체결하였다.

한편, 매도예정인과 매입확약인은 대출약정에 따라 매도예정인이 차주에 대하여 보유할 예정인 대출원금 합계 금 일백억원(₩10,000,000,000) 범위 내의 대출채권(이하 "**본건 대출채권**")의 매입확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용어의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본 약정에서 달리 정의된 용어를 제외하고는, 대출약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본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본 약정서 1 통을 작성하여 서명(기명날인)한 후 매도예정인이 이 약정서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 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한다.

매입확약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매도예정인 **주식회사 데일리펀딩 대부**

대표자 사내이사 : 이 해 우 (인)

책임준공확약서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에 명시된 대주를 말하며, 대출약정서상의 대주의 지위 및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가 양도된 이후에는 그 양수인을 말함) **귀중**

당사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 71-2번지 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포괄하여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하 **"시공사"**)로서, 본건 사업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주로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redacted] (이하 **"차주"**), 대주로서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대주"**), 연대보증인으로서 당사 및 [redacted] 등 사이에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되는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 이후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포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을 확약하고 보증합니다.

본 확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대출약정서에서 정의,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 본 확약서에서 **"책임준공"**이라 함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의 의무 불이행, 사업비 부족, 공사비 미지급 내지 지급지연, 차주 또는 시공사에 대한 부도사유 발생, 민원, 대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한 설계변경, 본건 사업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점유자의 명도지연, 사공사의 귀책사유 유무, 문화재 발굴 여부,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이유를 불문하고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이십사(24)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대출약정상 최초 인출일의 응당일(이하 **"책임준공예정일"**)까지 관계 법률, 공사도급계약 등에 부합하도록 본건 공사를 완료하고, 본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제외)을 관계 주무관청으로부터 득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정의 조건에 따라 본건 건물에 대한 분양률의 저조, 비정상적인 건설 내지 금융환경, 하수급인, 물품 및 자재공급업자, 운송업자 등

제3자에 의한 의무불이행 내지 지체, 건설자재의 부족, 노사분쟁 등의 경우에도 본건 건물을 책임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어 그 증액된 공사비를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책임준공예정일까지 본건 건물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차주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책임준공할 것을 귀사에 대하여 확약하고,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본건 건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에 투입되는 당사의 피고용인, 하수급인 등의 선임, 감독 및 이로 인한 분규와 건설장비 등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당사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 발생 이후 지체 없이 당사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보수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차주 기타 제3자가 그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당사는 본건 사업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 안전사고, 인근시설 및 주민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및 손실 기타 제반 민원(다만,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영업손실 등을 직•간접 원인으로 한 민원은 제외하며, 이 경우는 사업성 민원으로서 차주가 처리, 해결한다)에 따른 일체의 사항들을 당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처리합니다.

(3) 본 확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출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019년 6월 12일

시공사 주식회사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인)

연대보증계약서

본 연대보증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은 2019년 6월 12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다.

(1) 채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채권자"**)

(2) 채무자: 주식회사 [redacted](이하 **"채무자"**)

(3)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redacted](이하 포괄하여 **"연대보증인"**)

전 문

채무자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 71-2번지 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자, 연대보증인 등과 2019년 6월 12일 대출약정금 합계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의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라 하며,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아래에서 정의됨)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출약정에서 정의,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

채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1, 16층(역삼동, KR타워)

대표자 사내이사 이 해 우 (인)

공사비채권 양도담보계약서

본 공사비채권 양도담보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19 년 6 월 12 일 아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었다.

1. **담보권설정자**

   주식회사 [redacted](이하 "**담보권설정자**")

2. **담보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담보권자**" 또는 "**대주**")

전 문

주식회사 [redacted](이하 "**차주**") 및 대주는 대주가 차주에게 합계 금 일백억원(₩ 10,000,000,000)을 대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을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하였다.

담보권설정자는 대출금, 이자, 연체이자 및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라 차주가 담보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의무, 채무 및 책임(이하 "**피담보채무**" 혹은 문맥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자를 위해 담보목적물(아래에서 정의됨)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양도담보권과 관련한 각자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대출약정서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계약과 계약서, 약정과 약정서는 상호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에서 어떠한 계약이나 서류를 지칭할 경우, 이는 그때 그때 변경, 수정, 보충된 계약이나 서류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첫머리에 기재된 일자에 각자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원본 1부를 작성하여 담보권자가 원본을, 담보권설정자가 사본을 보관하기로 한다.

담보권자

데일리펀딩대부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 해 우 (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페이지 끝)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에 명시된 대주를 말하며, 대출약정상의 대주의 지위 및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가 양도된 이후에는 그 양수인을 말함) 귀중

본 포기각서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 71-2번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 지상 생활형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포괄하여 **"본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차주 겸 사업시행자로서 주식회사 [redacted] (이하 문맥에 따라 **"차주"** 또는 **"당사"**), 대주로서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대주"**라 한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redacted] 등 사이에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라 하며, 그 변경, 추가 및 대체되는 내용을 포함함]과 관련됩니다.

본 포기각서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본 포기각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① 차주에게 i)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거나, ii)기타 본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귀사로부터 당사에 사업시행권의 이전에 관한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 당사는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권(당사가 본건 사업의 위탁자 및/또는 시행사 지위에서 보유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각 호에서 명시한 바와 같다, 이하 **"사업시행권"**)을 아무 조건 없이 귀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대체시행사"**라 한다)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사업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지위, 의무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1. 본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대금반환청구권 등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는 각종 권리, 권한 및 그 지위를 포함함)
2. 본건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권
3. 본건 건물을 포함하여 본건 사업부지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⑦ 본 포기각서에 따른 당사의 시행권 등 권리의 포기는 대출약정, 본건 사업 관련 신탁계약의 모든 당사자, 위 각 당사자들의 포괄 또는 특별승계인 및 본건 사업부지 및 본건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1.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1부
2.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1부

2019년 6월 12일

각서인

주식회사 [redacted]
경기도 [redacted]
대표자 사내이[redacted]

시공권 및 유치권 등 포기각서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에 명시된 대주를 말하며, 대출약정상의 대주의 지위 및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가 양도된 이후에는 그 양수인을 말함) **귀중**

본 시공권 및 유치권 등 포기각서(이하 **"본 포기각서"**)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 71-2번지 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차주로서 주식회사 (이하 **"차주"**), 대주로서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대주"**), 연대보증인으로서 당사 및 등 사이에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이라 하며, 그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과 관련됩니다.

<본건 사업>

위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 71-2번지
공사명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시공사	주식회사
채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본 포기각서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본 포기각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출약정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대출약정의 목적 및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당사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대체시공사가 대주에 의하여 시공권의 인수인으로 확정되어 대주로부터 당사에 시공권 등의 이전에 관한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 당사는 위 확정된 인수인(이하 **"인수인"**)에게 시공권 등을 조건 없이 이전하고, 본건 공사현장을 명도할 것입니다. 이때, 당사는 인수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공권 등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의 이행, 시공 등 모든 행위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다. 당사는 당사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에게 구속력이 있는 모든 약정상, 당사의 영업, 재산 또는 재정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합니다.

라.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송이나 행정심판 또는 중재가 계속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가 인지하는 한 이러한 법적 절차가 개시될 우려도 없습니다.

마. 본 포기각서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주에게 제시한 당사에 관한 모든 정보는 중요한 점에서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바. 본 포기각서에 따른 당사의 시공권 및 유치권 등의 포기는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의 모든 당사자,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새로운 대출금융기관 및 위 각 당사자들의 포괄 또는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6. 본 포기각서의 작성, 체결 및 이행은 관련 법령, 당사의 정관 및 기타 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향후 본 포기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이사회 결의 기타 회사내부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동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12일

각 서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본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19년 6월 12일자로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1) 채권자 겸 담보권자 :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문맥에 따라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

(2) 양도담보권설정자(주주) : , (이하 포괄하여 **"담보권설정자"**)

(3) 채무자 겸 발행회사 : **주식회사** (이하 문맥에 따라 **"채무자"** 또는 **"발행회사"**)

전 문

채무자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 71-2번지 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2019년 6월 12일 채권자와 대출약정금 합계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의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이라 하며, 그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담보권설정자가 보유한 발행회사 발행의 본 계약 **별지 1.** 기재 주식(이하 **"본건 주식"**)에 대해 채권자를 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 1 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담보권설정자는 채무자의 담보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권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원본 1부를 작성하여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담보권자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가 각 사본을 보관하기로 한다.

채권자 겸 담보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1, 16층(역삼동, KR타워)

대표자 사내이사 이 해 우 (인)

확인번호:Ø1X1-6NSY-GLDR-1TAF-Q7RF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11. 29.>

착공신고필증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신축	허가(신고)일자	2019년01월25일

건축주	주식회사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9 외1필지		
대지면적			1,884 ㎡
건축물명칭	금촌동 69번지외 1필지 복합시설	주용도	공동주택
건축면적	1,232.302 ㎡	건폐율	65.41 %
연면적 합계	11,533.645 ㎡	용적율	437.47 %
착공예정일자	2019년04월20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2019년04월15일

파주시장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는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첨부

착공신고필증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1 - 2